

# 녹십자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제정 2024.03.28

개정 2026.03.26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(권한)** ①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
②위원회는 독립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, 제542조의6 제1항·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
## 제2장 구 성

**제4조(구성)** ①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②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이어야 한다.

**제5조(위원장)** ①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
③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다시 선정할 때까지, 회사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3장 회 의

**제6조(소집권자)**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**제7조(소집절차)** ①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1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**제8조(결의방법)**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**제9조(부의사항)**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독립이사후보의 추천
2. 기타 독립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10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**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11조(통지의무)**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5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의사록)**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전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 제4장 보 칙

제13조(지원부서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.

②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위원회 소집통지, 부의 안전의 준비 및 배포, 의사록 작성 및 부의 안전의 사후관리 등

제14조(세칙 등 제정) 위원회는 독립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세칙 등을 정할 수 있다.

제15조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